

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년		
신청 지방자치단체	자치단체명			연락처		
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	명칭					
	위치					
	지정면적					
	지정요성					
	지정효과					
	주요사업내용					
지구 내 주요 국가유산	명칭	유형	지정·등록 여부	소재지	면적	소유자

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조사보고서 2. 지역주민,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.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행정사항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1. 시·도지사의 검토의견서
2. 시·도지사의 조사보고서
3. 시·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

처리 절차

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